

EHS경영 관리규정

목 차

제 1 조 (적용범위).....	3
제 2 조 (목적).....	3
제 3 조 (용어의 정의).....	3
제 4 조 (책임과 권한).....	3
제 5 조 (EHS 경영관리시스템 이해와 실천).....	3
제 6 조 (EHS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4
제 7 조 (EHS 경영관리시스템 이행).....	4
제 8 조 (EHS성과관리).....	5
제 9 조 (포상 및 징계기준).....	5
제 10 조 (의사결정 기구 운영).....	5
부칙.....	6

알테오젠은 인간위주의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안전, 보건, 환경) 경영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 EHS경영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EHS 경영관리체계]

<추구가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로부터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EHS 경영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한다.

<운영원칙>

인간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마지막으로 회사의 자산, 서비스 및 이미지를 보호하여야 한다.

인간생명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외부 근로자 및 일반 공중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환경은 인간생명과 직결된 대기, 수질, 토양을 우선 보호하고 이후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자산, 서비스 및 이미지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HS 방침>

“사람을 보호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는, EHS 경영관리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하고 준수하며, 위험요인을 정성적/정량적으로 도출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관리해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서 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기술을 지속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와 산업계 전반에 EHS 경영에 대한 모범적인 기업이미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알테오젠의 EHS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과 책임에 대해 적용한다.

제 2 조 (목적)

EHS 방침과 연계하여 EHS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준수하여 시스템 경영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과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알테오젠이 통일되고 일관된 EHS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① 전사 EHS 주관부서 : 전사의 EHS경영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 ② EHS 경영관리시스템 : 알테오젠의 EHS 규정 및 사업장 업무절차, 업무표준을 말한다.

제 4 조 (책임과 권한)

- ① 전사 EHS 주관부서
 - 1. 전사 EHS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 2. 전사 EHS 목표 및 성과관리
 - 3. 전사 EHS 협의회 운영
- ② 전 구성원
 - 1. 전사 및 사업장 EHS 경영관리시스템 이해 및 실행

제 5 조 (EHS 경영관리시스템 이해와 실천)

모든 조직 및 구성원은 EHS 경영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EHS 경영은 경영활동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모든 구성원들은 EHS 경영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②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EHS 경영관리시스템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사 및 사업장 EHS주관부서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 ③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EHS 경영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 6 조 (EHS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전사 EHS 주관부서장은 알테오젠의 관리요소를 근간으로 전사 EHS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장 EHS주관부서장은 전사 경영관리시스템에 부합하는 EHS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경영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련 법규를 충족시켜야 한다.
- ③ 구성원, 협력회사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주요 공정/설비가 협력회사 등 타인에 의해 운영될 경우, 공장 EHS경영관리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EHS 경영관리시스템 이행)

모든 조직 및 구성원은 전사 및 사업장 EHS 경영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① EHS경영관리시스템을 고려하여 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EHS위험도에 따라 우선 과제를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 ③ 조직/개인의 행동이 EHS경영 및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새로운 공정/설비를 운전하게 될 경우, EHS 경영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다.
- ⑤ 경영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실행이 상이할 경우 전사 또는 사업장

EHS경영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유는 문서로 관리되어야 한다.

제 8 조 (EHS성과관리)

전사 및 사업장 EHS 경영 주관부서는 EHS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 ① 성과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절차화 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 후 경영층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EHS 경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이슈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논의해야 하며, 결정사항은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계열사 또는 사업장간 우수/실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④ EHS 경영관리시스템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외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EHS감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포상 및 징계기준)

- ① EHS 경영관리시스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보편 타당한 포상/징계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1. EHS 성과를 조직의 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사고/장애를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한 조직/인력을 포상하는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2. EHS 경영관리시스템을 위반하여 사고/장애가 발생한 경우, 징계 또는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 ② EHS포상 및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별규정 및 EHS포상 및 징계관리 절차에 따른다.

제 10 조 (의사결정 기구 운영)

전사 및 사업장 EHS위원회, EHS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EHS 활동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